



이 상품은 단독운용신탁상품으로 금전채권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금액이 신탁원본 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 금전채권신탁계약서

위탁자\_\_\_\_\_ (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하며,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신탁을 “이 신탁”이라 함)을 체결한다.

### 제 1 조 (신탁의 목적)

1. 갑은 자기가 보유하는 이 계약 말미에 기재된 금전채권을 수익자를 위하여 추심,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2.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금전채권을 추가 신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된 금전채권은 본 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본다.

### 제 2 조 (금전채권의 수탁범위)

1. 이 신탁에서 수탁하는 대상 재산(이하 “신탁원본”이라 함)의 내역은 별첨 1 신탁채권명세표와 같으며, 신탁원본을 수탁자가 운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수익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원본과 수익을 의미하며, “수익권”이라 함은 신탁원본 및 수익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부수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수탁한 신탁원본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신탁원본 : 액면가액 \_\_\_\_\_ 원
3. 갑이 제1조제2항 본조 제1항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금융기관이 채권자이거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과 보증보험회사에 부보되어 있는 채권
  - (2) 을이 그 지급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권
  - (3) 기타 이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을이 인정하는 현재 및 장래의 금전채권

### 제 3 조 (신탁채권의 적격)

- 갑은 신탁채권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다.
- (1) 채권 발생의 기본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
  - (2) 채권의 존재, 금액, 귀속주체 등과 관련하여 갑과 제3자간에 소송 기타 분쟁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

#### 제 4 조 (채권의 이전과 대항요건의 취득)

1. 갑은 제1조의 신탁시에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고 그 관계서류를 수탁자에게 인계한다. 또한 향후라도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에 대한 서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을에게 인계한다.

2. 갑은 신탁시 갑의 비용으로 이 신탁에 따르는 채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을이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항요건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갖추어 주도록 한다.

#### 제 5 조 (수익자)

이 신탁원본 및 수익의 최초 수익자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 6 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및 수익권의 분할)

1. 을은 이 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수익권 증서를 기명식으로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2. 을은 신탁재산의 지급에 관하여 내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권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 7 조 (수익권의 양도, 담보제공 등)

1. 수익자는 을의 확정일자에 의한 사전 서면 승낙과 수익권증서의 교부로서 이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을은 구(舊)수익권증서를 회수한 뒤 신(新)수익권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본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담보권자가 본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와 본 계약상의 수익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별첨2)을 을에게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 8 조 (신탁종료시의 신탁재산의 교부)

1. 이 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날에 그때까지 미지급된 제13조 소정의 조세 및 비용과 제14조 소정의 신탁보수를 공제한 후 지급하며, 을은 그 경우 수익권증서를 회수한다. 만약 신탁종료일이 을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이를 지급한다.

2.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경

우 신탁재산은 현상대로 교부한다.

#### 제 9 조 (신탁계약기간)

이 신탁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 10 조 (신탁의 계산 및 지급)

1. 이 신탁의 이익계산은 매월    일 또는 신탁종료시 계산한다. 다만, 제7조 1항에 따라 양도된 수익권에 대하여는 이익계산일을    년    월    일로 한다.
2. 제1항의 이익계산일이 을이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을 계산기일로 한다.
3. 이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을은 최종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최종계산일전의 계산에 관한 보고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수익자는 제3항의 계산에 따라 이 신탁원본 및 수익의 전부를 이의없이 수령한 때에는 당해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1 조 (신탁기간 중의 원본 및 수익의 교부)

을은 이 신탁원본 및 수익에서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제비용 및 신탁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 계산기일의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제 12 조 (신탁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수탁자의 사임)

1. 이 신탁은 갑과 을 사이에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없다. 다만, 신탁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신탁사무의 수행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갑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이 신탁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하기로 하며 해지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을은 갑과 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있다.

#### 제 13 조 (조세 및 기타비용 지불)

을은 이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 법률자문료 및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기타 신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신탁재산 중에서 지불한다. 그러나, 별도로 갑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 제 14 조 (신탁보수)

1. 을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중에서 수령하거나 갑에게 이를 별도로 청구하여 취득할 수 있다.
2. 신탁보수율은 신탁원본 평균잔액의 연( )% 상당금액으로 하여 아래에 정한 시기에 신탁보수를 취득하되, 갑, 을 및 수익자가 따로 합의 할 수 있다.  
신탁보수 취득시기( )

#### 제 15 조 (신탁사무의 일부위임)

1.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이 신탁사무의 일부를 갑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의 각호로 한다.
  - (1) 신탁재산의 추심사무 및 관리사무
  - (2) 신탁재산과 연관된 사무 또는 이에 부수하는 사무
3. 제2항에 따라 신탁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임사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임인에게 인도하여 대리 점유하게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신탁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수임인이 추심등으로 수령한 금액을 지체 없이 을에게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임인이 갑과 동일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을 별도 지정한 날에 인도하게 할 수 있다.
5. 본조에 따른 신탁사무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3의 “금전채권관리사무 위임에 대한 약정서”에 의한다.
6. 을이 본조에 따라 별첨4의 “금전채권관리사무 위임 약정에 관한 동의서”에 의하여 갑과 수익자의 동의 하에 신탁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임받은 신탁사무를 수행하던 중 갑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을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 16 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및 운용내역 통보)

1.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될 때까지 신탁업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갑은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2. 을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다음달 10일 까지 을이 정한 양식에 따라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운용내역 보고기간 또는 보고방법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제 17 조 (선관주의 의무 및 분별관리 의무)

1.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신탁사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나 그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갑이나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통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이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간접적,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 기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갑 또는 수익자가 손해발생 등 제반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수행하고 을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이행하는 한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을이나 을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탁재산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갑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을은 신탁재산을 을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원본 및 이익의 보전)**

을은 이 신탁의 수익권에 대하여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 **제 19 조 (계좌의 통지 및 인감의 제출)**

1. 수익자는 이 계약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을로부터 신탁재산을 지급받게 될 계좌를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갑과 수익자 기타 이 신탁의 관계자는 이 신탁과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미리 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좌와 사용인감 또는 서명의 변경시에도 이와 동일하다.

2. 이 신탁과 관련하여 갑, 수익자 기타 이 신탁의 관계자가 행하는 모든 통지 또는 의사표시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에 의하여 서면으로 을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하여야 한다.

3. 을이 제2항에 따라 수령한 서면에 날인된 인영 또는 서명을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의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을은 그에 의하여 생긴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자신이 수령한 각종 서면의 진정성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의무가 없다.

#### **제 20 조 (제신고)**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 갑, 수익자 기타 이 신탁의 관계자는 을에게 소정의 신고절차를 필하기로 한다.

- (1) 명칭, 소재지,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의 변경
- (2)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제출인감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고
- (3) 제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을의 본 신탁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기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을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사항

2.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생긴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신탁채권 명세의 열람)**

을은 수익자로부터 신탁채권 명세의 열람 청구를 받을 경우, 신탁채권의 채무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의 본점 \_\_\_\_\_에서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채권의 명세를 수익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2 조 (기타)**

1. 갑, 수익자 그리고 을은 관계 법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독규정 기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별도의 약정(이하, “특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 계약 또는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독규정 기타 관련 규정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전 고지된 을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3. 이 계약이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23 조 (적용법률 및 관할법원)**

1.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2.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국내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제 24 조 (계약서의 발효)**

본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신탁원본의 표시**

내역	
채권수	
원리금 합계	
상기 채권재산의 명세는 별첨1에 첨부한 신탁채권명세표의 기재와 같음.	



별첨1 (신탁채권명세표)

--



**별첨2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양수 동의뢰서)**

년 월 일자 체결한 금전채권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양수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	
신탁기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수익자의 의무	을에 대한 신탁보수 지급 및 조세 등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의 부담 기타 계약서에서 정하여진 사항
기 타	이 상품은 단독운용상품으로 금전채권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신탁원본액면가액에 미달 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은 현상대로 교부합니다.

200 년 월 일

양도인 : 주 소  
성 명 (인)

양수인 : 주 소  
성 명 (인)

상기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양수 도를 정히 승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수탁자 : 주 소  
성 명 (인)

### 별첨3 금전채권관리사무 위임에 관한 약정서

수임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위임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제1조 (위임사무의 범위)

본 약정서에서 “을”이 “갑”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는 20 년 월 일자로 “을”과 “ ”(이하 “병”이라 함)간에 체결된 금전채권신탁계약서 제15조(신탁사무의 일부위임)의 계약에 따라 위임된 업무로 한다.

#### 제2조 (관리채권의 내역등)

1. 본 약정서에 의하여 “갑”이 “을”을 위하여 관리하는 금전채권의 내역은 前條의 금전채권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갑”이 부담하는 관리위임의 기간은 “을”과 “병”간에 체결된 금전채권신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제3조 (관리계좌의 개설)

“갑”은 “을”으로부터 위임된 금전채권의 추심관리를 위하여 “을”의 영업점에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이의 내용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 (추심금액의 관리)

“갑”은 관리계좌에 입금되는 금전채권의 추심액에 대하여는 “을”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을”이 수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 (위임수수료의 지급)

“을”은 “갑”에게 금전채권신탁계약서 제8조에 의거 본 금전채권신탁계약 만료시에 채권관리사무 위임의 대가로 관리한 금전채권금액의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 제6조 (기타)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위임에 관한 관련법을 및 일반상거래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수임자(갑) : 주소  
성명

위임자(을) : 주소  
성명

